

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1991. 1. 12 제정
1995. 4. 29 개정
1996. 7. 9 개정
1999. 6. 19 개정
2012. 10. 20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24조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원회의 구성

제2조(전문위원회)

1. 학회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2.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관장분야는 다음과 같다.
 - 1) 학술전문위원회 : 전공분야별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 - 2) 대외협력 전문위원회 : 외국단체와의 국제적 학술교류, 북한 내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국내 타 학술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 - 3)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: 교통분야의 교육, 기술 및 정책관련 제도, 법률 등의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 - 4) 사업단 : 한시적 필요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3.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활동의 목적에 따라 소속위원을 위촉하며, 각 전공영역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4.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분과위원회)

1. 학회의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연구회를 설치·운영한다.
2. 연구회는 연구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, 연구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부회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각 연구회는 하부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3.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4.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최대 5회의 연임이 가능하다. 연구회장, 연구위원장의 임면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상시에 할 수 있다.
5. 각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은 연구회 및 연구위원회 활동의 목적에 찬동하는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개인의 사에 따라 소속회원을 모집한다.
6.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은 제5조 위원회 위원 관리, 제6조 회의소집, 제7조 회의록 작성에서 같은 의무를 가진다.
7. 각 연구회는 운영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. 그 운영세칙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

제4조(활동계획의 입안과 운영)

각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목적에 부합된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 위원 관리)

각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명단을 사무국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소집)

위원회의 회의는 사무국을 통하여 소집하며, 회의소집통보 시에는 회의 및 행사의 주요내용, 일시, 장소 등을 소속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작성)

위원장은 회의 개최직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.

1. 회의 장소 및 일시

2. 참석자 명단
3. 주요토의 내용
4. 의결사항
5. 기타 첨부물

제8조(예산집행)

1.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, 연구회장 및 연구위원장은 사전에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.
2. 사무국으로부터 집행이 위임된 예산 분에 대해서는 지출 후 그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위원회의 설치와 해체

제9조(설치와 해체)

각 전문위원회, 연구회와 연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설치되고 상임이사 의결을 거쳐 해체된다. 단, 한시적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단은 그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해체된다.